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1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훈기·김태년·김정호

맹성규 • 김용만 • 김태선

한병도 • 이광희 • 박희승

이병진 • 이정문 • 조인철

박홍배 • 이재강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함)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전략·제작·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 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 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 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이나 단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한다.

-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또

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 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정부 광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
<u><단서 신설></u>	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
	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
	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
	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
	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	②
무를 위탁받은 <u>기관이나 단체</u>	한국언론진흥재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단이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4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2. (생 략) <신 설>

<u>3.</u> (생 략)

⑤ (생략)

-----.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가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때 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⑤ (현행과 같음)